

행정 명령

뉴욕주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한 뉴욕주 전역의 재난 비상 사태 지속 선포

,병원 및 기타 의료 시설의 인력난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**때문에**,

병원 및 기타 의료 시설의 심각한 인력난은 중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 계층을 올바르게 돌보는 병원의 운영에 계속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**때문에**,

병원 및 의료 시설이 제역할을 하려면 즉각적으로 직원을 총원해야 합니다. **그리고**

이에 따라 본인 Kathy Hochul 뉴욕주 주지사는 뉴욕주 헌법 및 뉴욕주 법이 본인에게 부여한 권한에 의거, 이로써 행정명령 제4호에 명시되었으며 행정명령 제 4.11호에 따라 지속된 국가재난비상사태를 연장하고, 이에 따라 행정명령 제5호 및 후속조항에 포함된 조건, 약관 및 효력 정지를 다음 개정안이 효력을 발휘하는 조건에서 2022년 9월 27일까지 이어갑니다.

- 행정명령 제4호에 따른 보험법(Insurance Law) 4903항, 공중보건법(Public Health Law) 4903항의 적용 중단을 이에 폐기합니다.
- 보험법 4904항 하위절 c, 4914절 하위절 b, 1단락, 공중보건법 4904항 하위절 3, 공중보건법 4914항 하위절 2, a 단락에 따라 병원이 내부 및 외부 항의 제출 기한을 이에 폐기하고, 행정명령 제4호의 조항에 따른 항소 절차 중단 및 진행되는 경우 법에 따른 기한이 다시 설정됩니다.

이천이십이년 팔월 이십팔일 올버니시에서

본인이 서명하고, 주 정부 관인을

날인하여 이 명령을 발령함.

주지사

주지사 비서